



감정평가서 전자서명(원본) 증명서

《기본 정보》

감정서번호	07-2603-2-0006
평가금액	345,032,000 원
평가기관 / 평가자	대화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 / 안재광
서명해쉬 페이지수	총 29 페이지

《서명자 정보》

구분	소속 / 성명	서명해쉬(일부)	서명시간
담당평가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 / 안재광	eyJhbGciOiJFUzI1Nils	2026-04-07 16:31:00.0
대표	대화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 / 안재광	eyJhbGciOiJFUzI1Nils	2026-04-07 16:23:00.0
심사자	대화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 / 이명기	eyJhbGciOiJFUzI1Nils	2026-04-07 16:24:00.0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원본 감정평가서임을 확인합니다.

본 문서는 [전자서명법 제3조 2항]에 의거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감정평가서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생성된 원본 감정평가서로, 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며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본 문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 명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호리 562-5 소재 물건 (2025-15869-A01)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평가서 번호	대화 07-2603-2-0006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감정평가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 이외의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개작(改作)·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DAEHWA
다화평가법인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4로 18 청수로자벨 705호
대표전화 : (041)417-3535 FAX : (041)554-0224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안재광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

지사장

안재광

안재광

(인)

(인)

감정평가액	삼억사천오백삼만이천원정 (₩345,032,000.-)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평가목적 (제출처)	공매(국세,지방세) (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소유자 (대상업체명)	최흥제 (2025-15869-A01)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의뢰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6. 04. 03	2026. 04. 03	2026.04.07	
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2,537	토지	2,537	136,000	345,032,000
	합계					₩345,032,000.-
		이	하	여	백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이명기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 대상물건 개요

1. 토지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기호	소재지	면적 (㎡)	지 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 지세	개별공시지가 (원/㎡)
1	호리 562-5	2,537	답	생산관리 지역	휴경지	세로(가)	사다리 평지	31,8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호리 소재 "구도항"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에 대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감정평가이론 등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음.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6년 4월 3일임.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대상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6년 4월 3일임.

5.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5.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 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5.2. 감정평가조건

의뢰인 측에서 제시한 특별한 감정평가의 조건은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그 밖의 사항

대상물건 지상에 후첨 “현황사진”과 같이 제시외 수목(소나무)이 다수 식재되어 있으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의 사유로 제시외 수목의 소유관계 확인이 곤란한바 귀 의뢰인의 요청에 의거하여 감정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구매됨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 하였으니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1. 감정평가방법 관련 규정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 등이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절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2.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되, 다른 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

1. 토지의 감정평가

1.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산출내역

1.1.1. 개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 제2항에 의거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함.

$$\text{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 \text{비교표준지 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치} \times \text{지역요인 비교치} \times \text{개별요인 비교치} \times \text{그 밖의 요인 보정}$$

1.1.2.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시점 현재 공시되어 있는 표준지 중에서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고,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함.

위의 표준지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공시기준일: 2026. 1. 1.)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A	호리 549-3	991	전	전	생산관리 지역	세로(가)	자루형 완경사	31,200	-

구분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
표준지 A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1.3. 시점수정치 산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 소재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산정하여 적용하되, 기준시점 당시에 해당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발표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이하 동일).

충청남도 서산시 (생산관리지역)

적용기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6.01.01 ~ 2026.04.03	0.185 (1.00185)	충청남도 서산시 (26.01.01~26.04.03) (생산관리) 2026.01.01 ~ 2026.02.28 : 0.118 2026.02.01 ~ 2026.02.28 : 0.055 $(1 + 0.00118) * (1 + 0.00055 * 34/28)$ ≈ 1.00185

1.1.4. 지역요인 비교치 산정

지역요인이란 대상물건이 속한 지역의 가격수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사회적·경제적·행정적 요인을 말함.

결 정 의 건	지역요인 비교치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비교치는 대등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1.5.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

대상물건의 구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물건의 고유한 개별적 요인을 말하며, 비교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을 적용하였음.

■ 개별요인 비교항목(농경지대)

개별요인 비교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조건	접근도로의 상태	접근도로의 배치, 폭, 구조 등
	농로의 상태	농로의 폭, 포장 등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출하지와의 접근성
환경조건	자연환경	토양, 토질의 양부
		일조, 통풍 등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형상
	고저 등	고저 (경사지 등)
		경사의 방향
	경작의 장애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행정적 조건	토양오염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개별요인 비교치

기 호	비교 표준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계
1	A	1.03	1.00	1.10	1.15	1.00	1.00	1.303

기 호	개별요인 비교 내용
1	대상은 표준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에서 우세함.
	대상은 표준지 대비 환경조건(해안가, 조망 등)에서 우세함.
	대상은 표준지 대비 획지조건(형상 및 경사 등)에서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1.6.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과 국토교통부유권해석(건설부 토정30241- 36538, 1991. 12. 28.), 대법원판례(1998. 7. 10. 선고 98두6067, 1993. 9. 10. 선고 92누16300) 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평가선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단가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단가의 격차율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지역의 가격 수준, 낙찰가율 수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였음.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단가	=	비교사례 단가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단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치

1.1.6.1.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 인근 감정평가 선례 및 거래사례

- 인근 감정평가 선례 및 거래사례 내역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기준시점 거래시점	평가단가 거래단가 (원/㎡)	개별 공시지가 (원/㎡)	목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선례 1	호리 000-O, 000-O	825 (일단지)	대	2025.12.19	248,000	45,600	경매	주상용	생산관리
사례 1	호리 000-O	2,172	답	2022.05.14	101,289	29,600	실거래	휴경지	생산관리
사례 2	호리 000-O	136	답	2025.07.28	135,662	33,800	실거래	전	생산관리

※ 선례(1)은 일단지로 각 필지별 면적은 562-16번지는 732㎡, 562-78번지는 93㎡ 임.

※ 상기 개별공시지가는 선례(사례)의 기준시점(거래시점) 해당연도의 개별공시지가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거래사례 배분내역

구분	거래가액(원)	사용 승인일	건물 구조/용도	건물면적 (㎡)	적용 재조달원가	내용 년수	경과 년수	잔존 년수	비 고
사례 1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산식 : 거래가액(원) / 토지면적(㎡) = 토지단가(원/㎡)								
	220,000,000 / 2,172 ≒ @101,289								
사례 2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산식 : 거래가액(원) / 토지면적(㎡) = 토지단가(원/㎡)								
	18,450,000 / 136 ≒ @135,662								

■ 인근지역 정상지가 수준 검토

용도지역	토지용도	가격수준(원/㎡)	비 고
생산관리지역	농경지	130,000~140,000	대상토지 인근지역 내 유사토지

■ 최근 1년간 경매 낙찰가율(2025-04-01 ~ 2026-03-31)

(출처: 인포케어)

용 도	소 재 지	낙찰가율(%) (총 낙찰가/ 총 감정가)*100	낙찰률 평균(%) (낙찰가율합계/ 낙찰건수)	낙찰 건수
토지/답	충남 서산시	48.42	48.85	35
	팔봉면	45.47	71.47	3
토지/전	충남 서산시	48.52	48.46	34
	팔봉면	42.36	46.36	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1.6.2. 비교선례(사례) 선정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위치하며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며 인근에 위치하는 <선례 1>을(를) 비교선례(사례)로 선정하였음.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거래시점	거래단가 (원/㎡)	개별 공시지가 (원/㎡)	이용상황	용도지역	비 고
사례 1	호리 000-0	2,172	답	2022.05.14	101,289	29,600	휴경지	생산관리 지역	세로(가) 부정형 완경사지

구분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
사례 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말/양/염소/사슴/돼지/개/닭/오리/메추리 불가)<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6.3. 격차율 검토

■ 비교선례(사례)와 비교

- 사정보정

결 정 의 건	사정보정치
상기 선정된 선례(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시점수정

충청남도 서산시 (생산관리지역) 거래사례(1)

적용기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2.05.14 ~ 2026.04.03	3.377 (1.03377)	충청남도 서산시 (22.05.14~26.04.03) (생산관리) 2022.05.01 ~ 2022.05.31 : 0.204 2022.06.01 ~ 2022.06.30 : 0.143 2022.07.01 ~ 2022.07.31 : 0.247 2022.08.01 ~ 2022.08.31 : 0.201 2022.09.01 ~ 2022.09.30 : 0.129 2022.10.01 ~ 2022.10.31 : 0.098 2022.11.01 ~ 2022.11.30 : 0.073 2022.12.01 ~ 2022.12.31 : -0.007 2023.01.01 ~ 2023.12.31 : 0.154 2024.01.01 ~ 2024.12.31 : 1.176 2025.01.01 ~ 2025.12.31 : 0.815 2026.01.01 ~ 2026.02.28 : 0.118 2026.02.01 ~ 2026.02.28 : 0.055 $(1 + 0.00204 * 18/31) * (1 + 0.00143) * (1 + 0.00247) * (1 + 0.00201) * (1 + 0.00129) * (1 + 0.00098) * (1 + 0.00073) * (1 - 0.00007) * (1 + 0.00154) * (1 + 0.01176) * (1 + 0.00815) * (1 + 0.00118) * (1 + 0.00055 * 34/28)$ ≈ 1.03377

- 지역요인 비교

결 정 의 건	지역요인 비교치
비교표준지는 선례(사례)의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비교치는 대등함.	1.000

- 개별요인 비교

기 호	비교 선례(사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계
A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기 호	개별요인 비교 내용
A	전반적으로 대등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격차율 산정

구 분	기준단가(원/㎡) 공시지가(원/㎡)	사정 보정치	시점 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단가 (원/㎡)	격차율
거래사례(1) 기준 비교표준지 단가	101,289	1.000	1.03377	1.000	1.000	104,710	3.350
기준시점 비교표준지 단가	31,200	-	1.00185	-	-	31,258	

1.1.6.4.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보 정 내 용	적용 보정치
인근지역의 정상지가 수준, 평가선례, 거래사례 및 장래동향,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 평가액 결정을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이 타당함.	3.35

1.1.7.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단가 결정

산식: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기 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31,200	1.00185	1.000	1.303	3.35	136,442	136,000

1.1.8.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 호	사정면적(㎡)	적용단가(원/㎡)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1	2,537	136,000	345,032,000
합 계	-	-	345,032,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내역

1.2.1. 개요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text{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text{사례단가}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치} \times \text{지역요인 비교치} \times \text{개별요인 비교치}$$

1.2.2. 거래사례 선정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위치하며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있는 <거래사례 2>을(를) 선정하였음.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거래시점	거래단가 (원/㎡)	개별 공시지가 (원/㎡)	이용상황	용도지역	비 고
사례 2	호리 000-0	136	답	2025.07.28	135,662	33,800	전	생산관리 지역	세로(가) 사다리형 평지

구분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
사례 2	생산관리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21-11-10)

1.2.3. 사정보정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액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액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함.

결 정 의 건	사정보정치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단가 결정

산식: 거래사례 토지단가 × 사정보정치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기 호	거래사례 토지단가 (원/㎡)	사정보정치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135,662	1.000	1.00491	1.000	1.000	136,328	136,000

1.2.8.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 호	사정면적(㎡)	적용단가(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1	2,537	136,000	345,032,000
합 계	-	-	345,032,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3. 토지 시산가액 결정

1.3.1.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

기 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1	345,032,000	345,032,000
합 계	345,032,000	345,032,000

1.3.2. 시산가액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기 호	토지면적(m ²)	토지단가(원/m ²)	감정평가액(원)
1	2,537	136,000	345,032,000
합 계	-	-	345,032,000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호리 합 계	562-5	답	생산관리지역	2,537	2,537	136,000	345,032,000	
				이	하	여		₩345,032,000.-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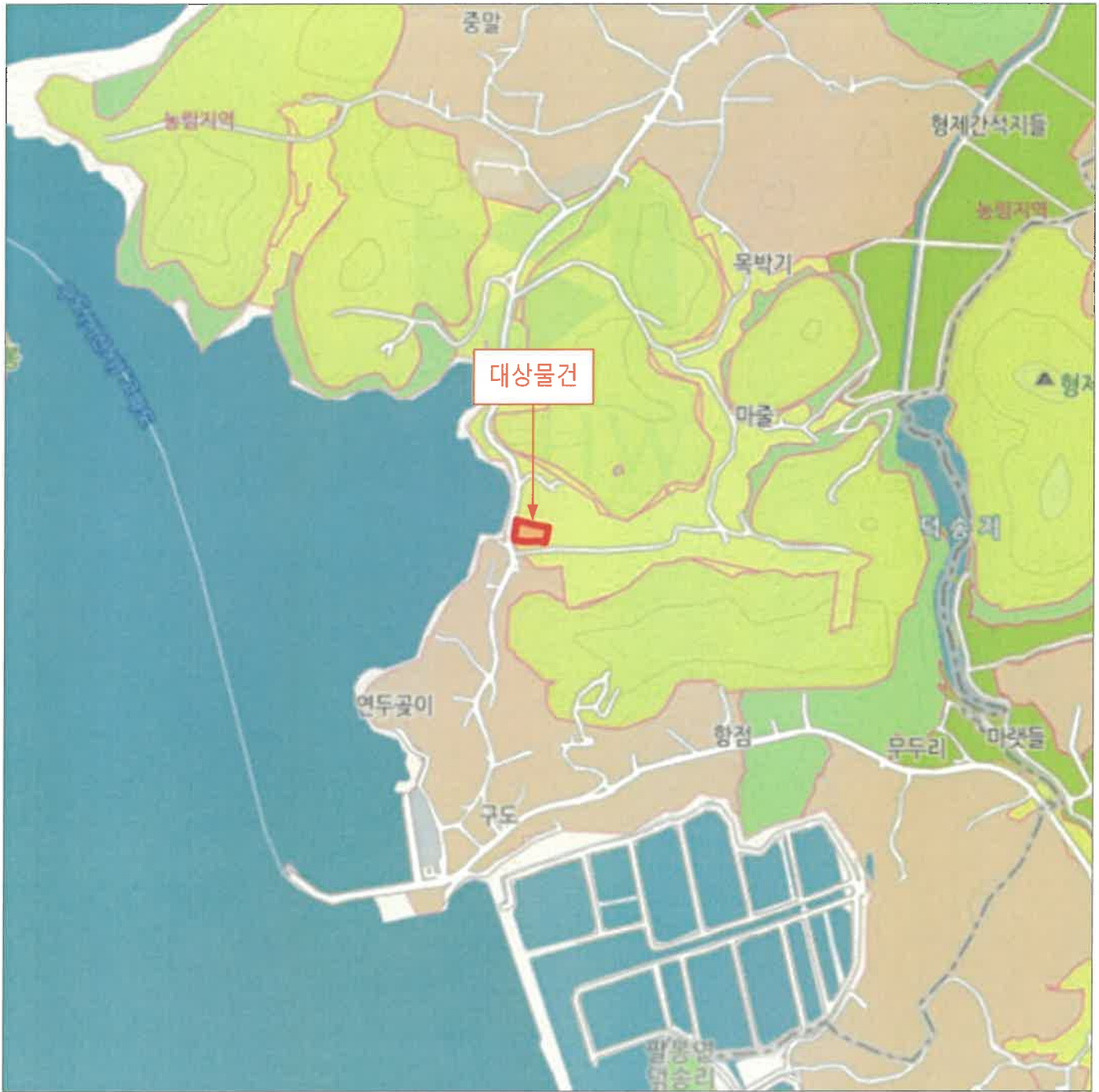
(토지) 감 정 평 가 요 항 표

위치 및 부근의 상황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호리 소재 "구도항"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해안가 주변으로 농경지 및 임야, 주택 및 펜션,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해안 농촌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황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일부 소나무 식재)임.
인접 도로상태	서측으로 노폭 약 6~7미터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	생산관리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21-11-10)임.
제시목록외의 물건	후첨 현황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수목(소나무)이 다수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임대관계 및 기타	-

광역위치도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호리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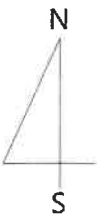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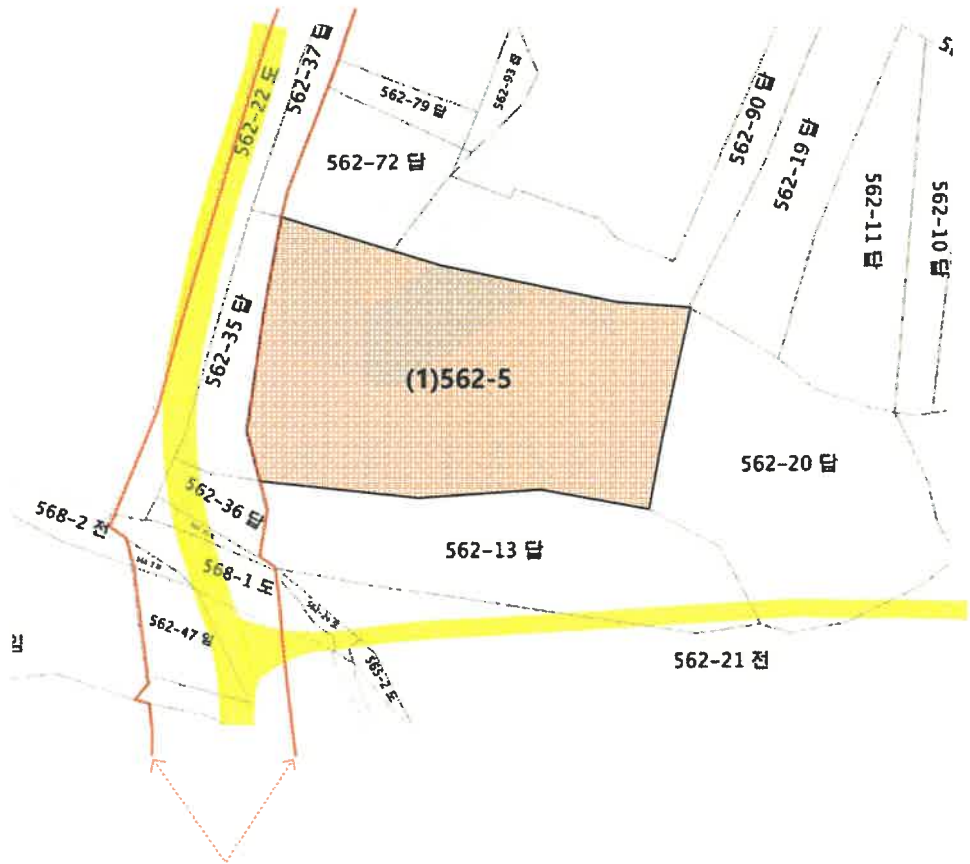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호리 562-5



지 적 개 황 도



S = 1/1,200



<도시계획시설 소로3류(선)>

범 례	평가 대상 토지 :		평 가 건 물 1층 :		평가제외건물(등 기) :	
	도 로 선 :		평 가 건 물 2층 :		평가제외건물(미등기) :	
	도시계획도로선 :		평가건물 3층이상 :			

현 황 사 진



【 대상물건 전경 】



【 대상물건 전경 】

현 황 사 진



【 대상물건 지상 제시외 수목 】



【 주위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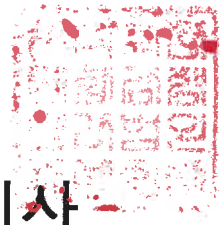
수 신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참 조

제 목 감 정 평 가 회 보

1. 저희 (주)대화감정평가법인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2026-03-25자 귀 제 『2025-15869-A01』 호로 의뢰하신 『최흥제
소유물건(2025-15869-A01)』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합니다.

별 첨 : 1. 감 정 평 가 서 1 부.
2. 청 구 서 1 부. 끝.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
지 사 장 안 재 광



담당 김준호

담당평가사 안재광

시행 07-2603-2-0006 (2026.04.07.)

우 3119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4로 18 청수로자벨 705호

/ <http://www.dhapp.co.kr>

전화 041-417-3535

전송 041-554-0224

/ daeha9@kapaland.co.kr

수 수 료 청 구 서

감정평가서번호 : 대화 07-2603-2-0006호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귀하

—금칠십육만일천이백원整 (₩761,200.-)

2026-03-25 일자로 의뢰하신 『최흥제 소유물건(2025-15869-A01)』 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감정인의 재산평가에 따른 수수료 기준』 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 구 내 역 -

과 목		금 액	비 고
평 가 수 수 료		574,535	● 평 가 수 수 료 ●
실 비	여 비	110,400	250,000 + ((345,032,000-50,000,000) x345,032,000/345,032,000x11/10,000) ≒574,535 ◎감정평가수수료 체계◎ 250,000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1/10,000
	물 건 조 사 비		
	공 부 발 급 비	2,000	
	기 타 실 비	6,000	
	특 별 용 역 비		
소 계		₩118,400	
합 계		₩692,000.-	※ 1,000원미만절사
부 가 가 치 세		₩69,200.-	
총 계		₩761,200.-	
기 납 부 착 수 금		₩.-	
정 산 청 구 액		₩761,200.-	

※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번호(260320006)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계 좌 번 호 ★

◆ 농협은행 : 1185-01-001612 (예금주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

◆ 사업자번호 : 312-85-28188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

지 사 장 안 재 광

(TEL. : (041)417-3535 FAX. : (041)554-0224)